

붙임1

수습평가자 자격 요건

1. **유관자격이나 유관학력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나. 기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다.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3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 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4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유관자격이나 유관학력 미보유자**)
 - 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 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4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비 고>

1. "유관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검정의 소관으로 하는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처리, 정보보안, 사무자동화, 정보기기운용 종목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유관학력"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고시에 따른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말한다.
3. "정보통신 유관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방송서비스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기기(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등을 말한다) 또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패키지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등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4. "정보보호 유관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암호 기술, 인증 기술 등을 말한다), 시스템·네트워크 보호(시스템 보호, 해킹·바이러스 대응, 네트워크 보호 등을 말한다) 또는 응용서비스 보호(전자거래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정보보호 표준화 등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